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4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4년 6월 3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
에 따른 자율신설 기준 폐지 및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
따른 문화재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분장사무 변경(안 제10조제2호)
 - (문화체육관광국)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
→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
-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삭제(안 제65조)
- 자율신설기구 존속기한 삭제: 과학인재국, 바이오식품의약국

5. 검토의견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변경에 따른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,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법령개정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분장 중 “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“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”으로 변경하고,
 - 자율신설기구(과학인재국, 바이오식품의약국)의 성과평가와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임.

- 「문화재보호법」이 2024년 3월 21일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고, 그 시행일이 2024년 5월 17일로 지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문화체육관광국 분장업무인 “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법 개정에 따라 “문화유산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,

- 2024년 3월 29일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에서 “제9조의2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관한 특례)”가 삭제됨에 따라, 해당 조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과학인재국과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,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